

국민과 함께하는 **정의의 파수꾼**

2021. 2. 25. 보도자료

공보관실 02)708-3411 / 팩스 02)766-7757



제 목 : 2월 선고 즉시보도사건 외 보도자료

우리 재판소에서 2021. 2. 25.(목) 선고한 심판사건 결정요지 등 (즉시보도 외 사건 보도자료)을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21. 2. 25.(목) 14:00 ~
- 장소 :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붙임 즉시보도 외 사건 보도자료 7건. 끝.

보 도 자 료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2016헌바84 형법 제307조 제2항 위헌소원]

[선 고]

헌법재판소는 2021년 2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형법 제307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이에 대하여는 위 조항이 허위임이 증명된 사실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기영의 보충의견이 있다.



2021. 2. 25.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시사프로그램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고, 재판 계속 중 청구인에게 적용된 형법 제307조 제2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6.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07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07조(명예훼손)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조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결정주문

-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07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심판 대상조항은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개인의 일반적 인격권, 명예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고, 민주사회의 여론 형성에 핵심적인 공론의 장이 제 기능을 다 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형사처벌함으로써 이를 예방하고 억제할 수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
- 허위 사실에 기초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타인의 명예를 부당하게 실추시켜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위험이 크다. 더군다나 오늘날은 매체의 급속한 발달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허위 사실이 적시되는 순간 통제 불가능할 정도로 빠르게 전파될 가능성이 높고, 허위사실적시로 인하여 개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부당하게 침해된 후에는 반론과 토론을 통한 자정작용이 사실상 무의미한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의 인격을 회복불능 상태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 나아가 허위의 사실이 통용되는 것을 방치할 경우 여론이 왜곡되고 공론의 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민주사회의 여론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개인의 인격권을 보다 충실히 보호하고 민주사회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위한 공론의 장이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행위를 형사처벌을 통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
- ‘허위사실’의 표현은 증거에 의하여 허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처벌되는데,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는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있고(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도2186 판결; 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도4949 판결 참조), 법원은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판례를 확립하여(대법원 1998. 10. 9. 선고 97도158 판결;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13 판결 참조), 심판대상조항의 구성요건을 엄격히 해석·적용하는 등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을 최소화하고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허위 사실을 인식하면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표현의 자유 보장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개인의 인격 실현과 자치정체의 이념 실현에 기여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신뢰를 바탕으로 한 비판과 검증을 통하여 형성되어야 할 공적 여론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표현의 자유 제한 정도가 심판대상조항을 통하여 달성되는 공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익 균형성 원칙을 충족한다.
- 그러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보충의견(재판관 김기영)

-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은 심판대상조항의 구성요건이므로, 검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하는데 대법원은 일정한 경우에는 피고인이 사실의 존재를 수증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지고, 소명자료의 제시가 없거나 그 자료의 신빙성이 탄핵된 때에는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도16939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이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검사는 ‘허위의 사실’이라는 점에 대하여 어떠한 증명책임도 지지 않게 되고, 피고인이 소명자료를 제시하더라도 검사의 증명책임은 그 소명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으로 축소되는바, 이는 실질적으로 ‘허위의 사실’이라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고, ‘허위인지 진실인지 증명되지 아니한 사실’이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 있는 사안에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발화자가 허위의 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이를 적시하였기 때문에 비난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고자 하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취지에 반하고, 피고인에게 행위 이상의 책임을 묻어서는 안 된다는 책임주의원칙에도 반한다.
- 그러므로 형법에서 심판대상조항은 ‘허위인지 진실인지 증명되지 아니한 사실’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허위임이 증명된 사실’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치주의와 책임주의원칙을 충실히 실현할 수 있도록 입법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 도 자 료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금지 및 허위사실공표금지에 관한 사건

[2018헌바223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선 고]

헌법재판소는 2021년 2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기부행위를 하는 것을 처벌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 제257조 제1항 제1호 가운데 제113조 제1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 후보자가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것을 처벌하도록 정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중 ‘당선될 목적으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2021. 2. 25.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7. 4. 12. 실시된 ○○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자로, 2016. 12. 14.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서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단체 등에 기부행위를 하고, 2017. 3. 31. 후보자로서 당선될 목적으로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기부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제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청구인은 이에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상고하였으나 이 또한 기각되었다.
-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 제250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18. 5. 2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113조 제1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 제257조 제1항 제1호 가운데 제113조 제1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이하 두 조항을 합하여 ‘이 사건 기부행위금지 조항’이라 한다), 공직선거법(2015. 12. 24. 법률 제13617호로 개정된 것) 제250조 제1항 중 ‘당선될 목적으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

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 또는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의 규정에 위반한 자

공직선거법(2015. 12. 24. 법률 제13617호로 개정된 것)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결정주문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된 것) 제113조 제1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 제257조 제1항 제1호 가운데 제113조 제1항 중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 관한 부분, 공직선거법(2015. 12. 24. 법률 제13617호로 개정된 것) 제250조 제1항 중 ‘당선될 목적으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이 사건 기부행위금지 조항

헌법재판소는 2014. 2. 27. 2013헌바106 결정에서 이 사건 기부행위금지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으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순전히 당사자의 주관에 의해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 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징표 등을 고려하여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며, 공직선거법 제112조는 기부행위의 개념을 정의하고 예외적

으로 허용되는 기부행위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지되는 기부행위가 어떤 것인지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기부행위금지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나)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이 사건 기부행위금지 조항은 부정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여 유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시키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임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선거의 공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형사처벌의 방법을 선택한 것은 그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객관적으로 후보자의사가 표출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이루어진 기부행위는 위 조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으며,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은 선거운동 내지 선거와 무관한 기부행위를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서 제외하고 있고, 나아가 대법원은 일응 선거와 유관해 보이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도1912 판결). 이와 같이 이 사건 기부행위금지 조항에 의해 금지되는 기부행위는 일정 범위로 제한되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선거의 공정이 훼손되는 경우 후보자 선택에 관한 민의가 왜곡되고 그로 인하여 민주주의 제도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금지되는 기부행위가 일정 범위로 제한되므로 법익의 균형성 요건 또한 준수하였다.

결국 이 사건 기부행위금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의 입법취지가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여기서 ‘행위’라 함은 일상생활의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후보자의 자질, 성품, 능력 등과 관련된 것으로서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사항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또한 ‘기타의 방법’은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에 준하여 공직선거 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달하는 매체 내지 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국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의 문언의 의미 및 입법취지,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고, 법 집행기관이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은 선거인들에게 후보자의 능력, 자질 등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후보자로 하여금 당선될 목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위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므로 수단의 적합성 또한 인정된다.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과 같이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달할 수 있는 매체 내지 방법을 통해,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의견표현이 아닌 허위의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그 문언 자체로 처벌되는 행위의 유형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의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허위의 사실의 대상이 되는 후보자의 ‘행위’란 후보자의 자질, 성품, 능력 등과 관련된 것으로서 선거인의 후보자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사항으로 한정된다. 한편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9도26 판결 참조), 허위사실공표금지가 표현에 대한 지나친 제약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은 선거인들에게 후보자의 능력, 자질 등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

으로서 이로 인해 달성되는 공익은 중대하다. 반면 청구인과 같은 후보자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허위의 사실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알리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지만,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정치적 표현을 하는 것은 허용되므로 그 불이익이 감수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으로 인하여 제한되는 사익이 달성되는 공익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의 원칙도 충족한다.

결국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2013헌바106 사건에서 이 사건 기부행위금지 조항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하였는데, 이 사건에서도 이를 유지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허위사실공표금지 조항을 포함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중 ‘재산’, ‘경력’ 부분에 대하여 각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헌재 2010. 9. 30. 2009헌바355; 헌재 2017. 7. 27. 2015헌바219). 이 사건에서는 허위사실 공표의 대상이 되는 후보자의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명하는 한편, 해당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아 선거운동의 자유 내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보 도 자 료

형사소송비용 피고인 부담 사건

[2018헌바224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선 고]

헌법재판소는 2021년 2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형사재판절차에서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인이 부담하게 하도록 정한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된 것) 제186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2021. 2. 25.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 사건개요

- 청구인은 사기의 범죄사실로 1심에서 벌금 700만원 및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재판계속 중, 피고인에 대한 소송비용의 부담의 근거가 된 형사소송법 제186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된 것)

제186조(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①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결정주문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된 것) 제186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 재판청구권의 의미

헌법 제27조는 형사피고인에게 공정하고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속에는 신속하고 공개된 법정의 법관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한다.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서는 입법자에 의한 구체적 형성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형사소송에서 발생하는 소송비용의 부담 문제는 결국 형사소송의 구조, 절차 운영의 적정성, 국가 재정 등에 따라 정해지는 입법정책적 문제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합리적인 입법형성의 범위를 일탈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본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사재판절차에서 피고인의 불필요하고 무익한 방어방법의 제출이나 정식재판 청구 또는 상소의 남용을 방지하는 측면이 있고,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적정성, 경제적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킬 것인지 여부 및 그 정도를 재량으로 정함으로써 사법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

피고인이 부담할 여지가 있는 소송비용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과 관련된 비용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 또한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추후 빈곤을 이유로 소송비용 재판의 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정하여(법 제487조), 소송비용의 부담이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소송비용 부담의 재판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다(법 제191조 제2항).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소송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입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결정의 의의

형사재판절차에서 법원이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고 정한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한 최초의 결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통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사법절차의 적정을 도모할 수 있고, 피고인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의 범위가 제한적이며,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추후 빈곤을 이유로 집행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보 도 자 료

지방공무원의 정치운동죄에 관한 위헌소원 사건

[2019헌바58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위헌소원]

[선 고]

헌법재판소는 2021년 2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병과하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1항 중 제57조 제2항 제5호의 정당 가입 권유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합헌]



2021. 2. 25.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 사건개요

- 충북 ▲▲군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청구인은, 전국동시지방선거 ▲▲군수 선거와 관련하여 김○○으로부터 ‘▲▲군수 후보 경선에서 최□□을 지지할 권리당원을 모집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권리당원 8명을 모집하여 그 입당원서를 충북도당에 제출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1심법원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다.
- 이후 청구인은 항소하면서 그 항소심 재판 계속 중 지방공무원법 제82조 제1항에 대해 위헌제청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위 법률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공무원이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병과하도록 규정한 지방공무원법(2014. 1. 14. 법률 제12235호로 개정된 것) 제82조 제1항 중 제57조 제2항 제5호의 정당 가입 권유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지방공무원법(2014. 1. 14. 법률 제12235호로 개정된 것)

제82조(정치 운동죄) ① 제57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관련조항]

지방공무원법(2008. 12. 31. 법률 제9301호로 개정된 것)

제57조(정치운동의 금지)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것

□ 결정주문

- 지방공무원법(2014. 1. 14. 법률 제12235호로 개정된 것) 제82조 제1항 중 제57조 제2항 제5호의 정당 가입 권유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1.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 위반 여부

- 심판대상조항이 법정형에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병과’만을 정하고 있는 결과, 청구인의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없게 함으로써,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문제된다.
- 심판대상조항은 헌법 제7조, 제116조 제1항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선거의 공정성’이란 국가적 법익을 그 보호법익으로 한다.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도록 정한 지방공무원법은 1963년 제정된 이후 2013년까지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2014년 개정된 지방공무원법에서 벌금형이 삭제되고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병과로 규정되게 되었다. 국회 입법자료에 따르면, 당시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의 대선개입이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공무원의 정치운동·선거개입에 관한 반성적 고려를 바탕으로, 기존의 ‘징역형 또는 벌금형’의 선택형 체계로는 일반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형사정책적 측면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을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병과로 규정하게 되었음이 확인된다. 한편, 심판대상조항은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의 하한에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작량감경 없이도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가능하며, 징역형과 자격정지형 모두에 대한 선고유예도 가능하므로, 이에 따른 양형재량을 통해 법관이 구체적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이러한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입법당시의 시대적 상황,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고려, 법관의 양형재량 및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 가능성을 종합하면,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이 그 범죄의 죄질 및 행위자의 책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필요한 정도를 벗어난 것이어서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2. 형벌체계상 균형 상실로 인한 평등원칙 위반 여부

-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제255조 제1항 제1호, 제57조의6 제1항, 제60조 제1항)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지방공무원법상 정치운동죄(심판대상조항)는 ‘3년 이하 징역과 3년 이하 자격

정지'로 정함으로써 벌금형의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는바, 이러한 심판대상 조항의 법정형이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와의 관계에서 형벌체계상의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문제된다.

-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는 공무원의 경선운동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고 있음에 반하여, 지방공무원법상 정치운동죄는 제57조 제2항 각 호를 통해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거나 구체적 해악이 있다고 판단된 지방공무원의 정치운동 행위를 개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의 주체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미성년자, 선거권이 없는 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교원 등'이 포함됨에 반하여, 지방공무원법상 정치운동죄는 그 주체가 공무원으로 한정되므로 그 보호법익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추가된다.
- 결국 입법자는, 지방공무원법상 정치운동죄(심판대상조항)가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보다 행위태양과 보호법익에 있어 불법이 가중됨을 고려하여 그 법정형을 달리 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 결정의 의의

- 이 사건은 형사재판에 회부된 공무원이,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선거에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정당에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의 위헌 여부를 다투지 아니하고, 그러한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을 병과'하도록 정한 법정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반하고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 사안이다.
- 이에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입법당시의 시대적 상황,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고려, 법관의 양형재량과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 가능성, 행위태양과 보호법익에 있어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운동죄와의 차이를 심리하여, 심판대상조항의 법정형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보 도 자 료

공갈죄의 이득액에 따른 가중처벌 사건

[2019헌바128, 2020헌바275(병합) 형법 제350조 제1항 위헌소원 등]

[선 고]

헌법재판소는 2021년 2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그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는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고, 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50조 제1항’에 관한 부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50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 [\[합헌\]](#)



2021. 2. 25.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 사건개요

1. 2019헌바128

가. 청구인은 자동차엔진과 미션 쿨링팬, 히터 및 에어컨 공기조절 케이스 등 부품을 생산하여 피해자 회사에 납품하여 왔고, 피해자 회사는 위 쿨링팬과 케이스를 비롯하여 다른 협력업체들로부터 납품받은 부품으로 공조장치를 완성한 다음, 이를 자동차 회사 공장의 완성차 생산라인에 공급해 왔다. 한편, 자동차 회사는 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부품 생산과 완성차 조립을 동시에 함으로써 부품 재고 물량을 1~2일 치만 보유하는 생산시스템을 취하고 있어, 만약 대체 불가능한 부품을 공급받지 않으면 2~3일 이내에 완성차 생산라인이 중단될 수밖에 없고, 완성차 생산라인이 중단되면 다른 협력업체들도 연쇄적으로 생산이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나. 청구인은 2015. 12.경부터 2016. 3. 중순경까지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130억 원에 매각하려 하였으나 적절한 매수인을 찾지 못하자,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가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부품 공급 중단을 무기 삼아 생산공장을 청구인이 요구한 금액 인 1,300억 원에 인수하도록 하였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회사 등으로부터 사업양수도대금 명목으로 합계 1,200억 원을 교부받아 갈취하였다는 등의 피의사실로 기소되었다.

다. 1심 법원은 청구인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공갈) 위반과 특수상해죄로 징역 9년을 선고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8. 10. 12.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상고심 계속 중, 형법 제 350조 제1항의 '공갈하여' 부분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자, 2019. 4.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의 대리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부분을 청구취지에 추가하는 내용의 청구이유 보충서를 제출하였다.

2. 2020헌바275

가. 청구인은 자동차 내장재인 카페트 배면 발포패드 등을 생산하여 피해자 회사들에 납품하여 왔고, 피해자 회사들은 발포패드를 공급받아 카페트 배면에 부착하거나, 발포패드를 부착한 카페트를 공급받아 이를 자동차회사에 납품해 왔다. 한편, 자동차회사에서는 상품의 가격경쟁력 제고 방안 중 하나인 재고 비용 절감을 위해 재고 부품을 1~2일 치만 보유하고, 부품 생산과 완성차 생산을 동시에 진행하는 방식으로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어, 피해자 회사들과 같은 협력업체들이 부품을 제 때 납품하지 못하면 차종별로 분당 약 77만 원 ~ 110만 원 단위의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 적기 납품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낮은 평가를 받게 되어 향후 입찰에서 배제될 위험을 부담하고 있었다.

나. 청구인은 위 사정을 알면서 2018. 6. 24.경 피해자 회사들에 대하여 각 19억 원 및 17억 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개별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 발송하여 피해자 회사들의 임직원을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각 19억 원과 18억 7,000만 원을 교부받았다는 피의사실로 기소되었다.

다. 1심 법원은 2019. 8. 28. 청구인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갈)죄로 징역 4년을 선고하였고, 항소심 계속 중 청구인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형법 제350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0. 4. 22. 항소 및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020. 5. 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과 청구인들이 실질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취지, 당해 재판의 적용 조항 및 조항들 간의 상호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고, 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50조 제1항’에 관한 부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된 것, 이하 연혁에 상관없이 ‘특정경제범죄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50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하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로 한다.

[심판대상조항]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고, 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된 것)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관련조항]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9조(부당이득) ① 사람의 공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결정주문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고, 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50조 제1항’에 관한 부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7. 12. 19. 법률 제15256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50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이유의 요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2010헌바54등 결정에서 형법상 공갈죄의 ‘공갈’ 부

분에 대하여, 2015. 2. 26. 2014헌바99등 결정과 2015. 3. 26. 2012헌바297 결정, 2016. 3. 31. 2016헌바25 결정에서 업무상 배임죄나 사기죄를 범한 경우 그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구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의 ‘이득액’ 부분에 대하여 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형법 제350조 제1항이 구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의 구성요건의 일부로서 가지는 의미도 위 선례에서의 의미와 다르지 않고, 심판대상조항의 ‘이득액’의 의미 역시 구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중 업무상 배임죄나 사기죄 부분에서의 ‘이득액’의 의미와 동일하므로, 헌법재판소의 종전 판단은 그대로 타당하고, 달리 이를 변경하여야 할 사정이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 위배 여부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공포심을 야기하고, 그에 따른 타인의 하자 있는 의사에 기초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사적 자치의 영역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허용하게 되면, 피공갈자의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의사결정의 자유, 즉 억압이나 강제되지 아니한 재산 처분행위의 자유가 박탈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정당하지 못한 재산 상태를 사후적으로 시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러한 결과를 유발시킨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공갈 행위에 대하여 사전 억지력을 갖기 위해서는 일반예방적 효과를 갖는 형벌에 의하는 것이 다른 제재 수단에 의하는 것보다 실효성이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행정적 제재 등이 형사처벌만큼 실효적인 수단이라 단정할 수 없고, 부당이득죄와 공갈죄는 행위 태양이 서로 달라 별도로 부당이득죄가 존재한다고 하여 지나친 형사제재라고 볼 수도 없다.

특정경제범죄법은 경제규모의 확대와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법정형이 한 차례 현실화되었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작량감경하여 집행유예도 선고될 수 있는 점, 공갈죄는 재산범죄이므로 이득액이 불법성의 핵심적인 부분을 이루는 점, 이득액에 따른 단계적 가중처벌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일반예방 및 법적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고, 법원의 양형편차를 줄여 사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조항이 이득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을 하여도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종전 헌법재판소의 선례에 따라 심판대상조항의 ‘공갈’ 부분과 ‘이득액’ 부분의 의미가 불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청구인들은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행정적 제재, 부당이득죄 등을 덜 침해적인 수단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공갈 행위에 대한 사전 억지력, 일반예방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심판대상조항을 대신할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고, 재산범죄에서 이득액이 가지는 의미 등을 고려해 심판대상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보 도 자 료

강제추행에 대한 정당방위 사건

[2019헌마929 기소유예처분취소]

[선 고]

헌법재판소는 2021년 2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청구인의 상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청구인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볼 여지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에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인용]



2021. 2. 25.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8. 10. 31.경 김○○에게 사기그릇을 휘둘러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귀 부위가 찢어지는 상처를 내 상해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김○○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자 놀라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나 그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1회의 가격에 그친 점 등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9. 8. 21. 그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주문

- 피청구인이 2019. 3. 12. □□지방법원 2018년 형제61330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 이유의 요지

● 청구인의 행위로 김○○이 ‘상해’를 입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사기록상으로는 김○○이 청구인의 행위로 상해를 입었음을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에도, 피청구인은 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청구인에 대한 피의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였다.

● 청구인의 행위가 정당방위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는지 여부

수사기록에 따르면, 김○○은 고시원 내 주방에 청구인과 단 둘만 있는 상황에서 청구인이 주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청구인의 손목을 잡아 적극적으로 막으면서 청구인의 가슴을 갑자기 움켜쥐어 추행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들고 있던 사기그릇을 휘두른 사실이 인정된다.

김○○은 청구인보다 9살가량 젊은 남성으로, 청구인이 김○○의 완력을 이용한 갑작스러운 강제추행행위를 벗어나기는 그 자체로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게다가 청구인은 김○○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할 당시 물을 담기

위해 사기그릇을 들고 있어 손이 자유롭지도 않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당시의 급박한 상황에 비추었을 때, 청구인에게 이미 들고 있던 사기그릇을 내려놓고 다시 맨 손으로 김○○에 저항하거나, 머리 부분이 아닌 다른 신체부위를 가려 내어 타격하는 등 김○○의 강제추행행위에 대한 다른 방어 방법을 취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수사기록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은 폐쇄된 공간에서 갑자기 이루어진 김○○의 추행행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들고 있던 사기그릇을 이용하여 사회적으로 상당한 범위 내에서 반격방어의 형태로 저항하였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

설령 청구인의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다음의 점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김○○은 밤 10시가 지난 무렵 청구인이 고시원 내 여성용 공용욕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따라가 욕실 전원을 끄는 등 공포심을 야기하는 행위를 반복하였다. 김○○은 이에 그치지 않고, 같은 날 밤 10시 30분경 위 고시원 내 주방으로 가는 청구인을 따라간 다음 청구인을 나가지 못하게 한 채 기습적으로 강제추행행위를 하였다. 김○○의 강제추행행위 내용과 그 행위가 이루어진 시각 등 사건 당일 정황, 김○○의 강제추행이 이루어진 장소의 폐쇄성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방위행위는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적지 않다.

- 피청구인으로서 김○○이 청구인의 방위행위로 인해 입은 피해가 형법상 상해죄에서 말하는 상해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한 다음, 김○○의 강제추행행위와 청구인의 방위행위의 내용, 그 당시 청구인이 놓인 상황, 법익침해 정도, 보호이익과 침해이익의 경중 등을 면밀히 따져 청구인의 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 등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살폈어야 한다.
- 피청구인이 이에 관한 충분하고 합당한 조사 없이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형법상 상해죄 또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중대한 수사미진에 따른 자의적 검찰권 행사라 아니할 수 없고,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된다.

□ 결정의 의의

- 헌법재판소는 이 결정에서, 청구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을 당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정당방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등 이유로, 청구인에게 상해의 피의사실을 인정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였다. 이 결정은, 검사가 강제추행 피해자의 방위행위가 형법상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그 피해자가 사건 당시 처한 상황과 방위행위의 필요성 및 긴급성 등을 충분하고 합당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보 도 자 료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석면 건축물을 철거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사건

[2020헌마820 기소유예처분취소]

[선 고]

헌법재판소는 2021년 2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석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준수하도록 정한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은 근로자를 사용한 사업주에게만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아닌 청구인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의 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처분을 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인용]



2021. 2. 25.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9. 4. 중순경 강원 평창군 용평면 용전리에서,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재래식 화장실을 굴삭기로 철거하면서 법령이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 청구인은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에게만 적용되어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사업주가 아닌 청구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처분을 함으로써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결정주문

- 피청구인이 2020. 3. 17. □□지방검찰청 ◆◆지청 2020년 형제1017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 관련법령

- 산업안전보건법(2018. 4. 17. 법률 제15588호로 개정되고, 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3(석면 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6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 제3항, 제34조 제2항, 제34조의4 제1항, 제38조 제3항, 제38조의3, 제46조, 제47조 제1항 또는 제49조의2 제1항 후단을 위반한 자.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2012. 3. 5. 고용노동부령 제49호로 개정되고,

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2조, 제14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9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및 제38조의3 등에서 위임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89조(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 수립) ① 사업주는 석면해체·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법 제38조의2에 따른 일반석면조사 또는 기관석면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의 절차와 방법
2.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3. 근로자 보호조치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야 하며, 작업장에 대한 석면조사 방법 및 종료일자, 석면조사 결과의 요지를 해당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이유의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 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의 수범자

-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법 제1조), 석면 건축물 철거·해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 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법 제38조의3).
- 고용노동부령인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서는 석면 해체·제거작업과 관련하여 그 작업의 절차와 방법, 석면 흩날림 방지 폐기방법, 근로자 보호조치가 포함된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 수립 등 여러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규칙 제489조 이하), 그 의무의 수범자는 모두 사업주로 명시하고 있다.
- 한편,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를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는바(법 제2조 제3호), 위 석면 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의 수범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인 ‘사업주’이다.

● 청구인은 ‘석면 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해야 하는지

- 청구인은 석면 건축물인 재래식 화장실을 철거함에 있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혼자 굴삭기를 이용하여 철거하였다.
- 따라서 청구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석면 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결정의 의의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석면 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수범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석면 건축물을 철거한 청구인에게 위 작업기준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의사실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는바, 헌법재판소는 위 기소유예처분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취소하였다.